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공무상의 질병·상해 휴직일당 (1일이상 365일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공무상의 질병·상해 휴직에 들어간 경우 휴직 1일당(1회 휴직당 365일한도) 365일을 보험가입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휴 직 사 유</th> <th>지 급 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상해</td> <td>보험가입금액</td> </tr> <tr> <td rowspan="2">질병</td> <td>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td> <td>보험가입금액×50% (1년미만 25%)</td> </tr> <tr> <td>기타 질병</td> <td>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50%)</td> </tr> </tbody> </table>	휴 직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		보험가입금액	질병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보험가입금액×50% (1년미만 25%)	기타 질병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50%)
휴 직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		보험가입금액											
질병	정신 및 행동장애 (F04-F99)	보험가입금액×50% (1년미만 25%)											
	기타 질병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50%)											
특별약관	교직원 질병·상해퇴직 (직권면직, 사망)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질병·상해로 인해 휴직후 직권면직을 당한 경우 (단,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제외)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10%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50%이상 후유장해	질병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 한도</li> </ul>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 한도</li> </ul>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교원소청 심사를 보험기간 중에 청구하고 대리인으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별약관		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처분 취소, 변경 등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교권침해피해Ⅱ (연간1회한)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처리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교직원인 피보험자가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 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500만원 한도)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집단따돌림, 체벌포함)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 초등학교~대학교교사(경영자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10만원공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2천만원 한도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형법 제266조(과실치사)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벌금액	과실치사	5백만원 한도																	
			과실치사	7백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Ⅱ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Ⅲ (경찰조사단계 포함)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 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5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상등급</th> <th>보상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급</td> <td>5천만원</td> </tr> <tr> <td>4~7급</td> <td>3천만원</td> </tr> <tr> <td>8~14급</td> <td>1천만원</td> </tr> </tbody> </table>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1천만원									
	부상등급	보상한도																			
	1~3급	5천만원																			
4~7급	3천만원																				
8~14급	1천만원																				
자동차사고 벌금Ⅱ (대인)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약관 참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1,000만원</td> </tr> <tr> <td>2급</td> <td>500만원</td> </tr> <tr> <td>3~4급</td> <td>300만원</td> </tr> <tr> <td>5급</td> <td>150만원</td> </tr> <tr> <td>6급</td> <td>80만원</td> </tr> <tr> <td>7급</td> <td>40만원</td> </tr> <tr> <td>8~11급</td> <td>20만원</td> </tr> <tr> <td>12~14급</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중대법규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의 치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위반,6주미만)	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구분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기준						
	28일(4주)미만 진단시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28일(4주)이상 ~ 42일(6주)미만 진단시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구분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2.5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9천만원				
	140일 이상 진단시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2억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불송치및불 기소)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1~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2억5천만원 기준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화재벌금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table border="1" data-bbox="1099 1473 1409 1581"> <tr> <td>실화</td> <td>1,500만원 한도</td> </tr> <tr> <td>업무상실화 중실화</td> <td>2,000만원 한도</td> </tr> </table> <p>※ 1사고당 금액임</p>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실화	1,500만원 한도											
업무상실화 중실화	2,0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 (금전손해액의 70%)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벌금Ⅱ(대인)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 벌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1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장 ※ 1사고당 벌금형의 확정 이유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타인의 신체상해와 관련한 벌금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례보상 대상 계약에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됨				1천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중 우연한				1억원 한도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책임(대물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공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대물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공제)
	특정정신장애진단비 (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개시일 이후에 특정정신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 보험개시일 = 보험가입 180일 이후	보험가입금액 (1년미만 50%)

※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 감액기간 등 보장내용 제한 사항

특약명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감액지급
특정정신장애진단비(최초1회한)	1년 미만	50%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부터 입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 배상책임 및 비용 관련 특별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